금융위원회

보 도 자 료

보도	2016.7.26(화) 조간 이후	배포	2016.7.25(월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강 영 수(02-2100-2850)	담 당 자	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852)
	금감원 외환감독국장 류 태 성(02-3145-7920)		권 화 종 팀 장 (02-3145-7928)

제 목 : 「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규정변경 예고

◇ **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도입**하고 은행 **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**를 일괄 정비

Ⅰ 추진 배경

□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**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**(이하 외화 LCR이라 함)을 규제로 도입

○ **대외불안 발생시 은행의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강화**하고 실물부문에 대한 **안정적인 외화자금 공급 기능을 확보**

□ 이와 함께,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,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일괄 정비하여 **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해소**

※ 동 내용은 '16.6.16일 「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도입 방안(관계부처 합동)」에서 기 발표한 사항임

Ⅱ 개정규정안 주요내용

1 외화 LCR 규제 도입 (안 제63조의2)

○ 대외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환부문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**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해 80% 이상의 고유동성자산을 보유**하도록 함

※ 6.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'매월 평균적으로' 80%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에 구체적으로 반영

- 다만, 외화부채 규모가 **5억달러 미만**이고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**100분의 5 미만**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

* '15년말 기준, 전북, 제주, 광주은행이 해당

2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면제(안 제68조)

○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**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와 동일하게 외화 LCR의 적용을 면제**

3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비율 완화 및 면제(안 제92조, 안 제94조)

○ **산업은행**에 대해서는 **외화 LCR 규제비율을 100분의 20만큼 완화**하여 규제비율을 60%로 적용하고 **수출입은행**에 대해서는 **외화 LCR 규제를 면제**

4 외화 LCR의 규제비율의 점진적 상향 (안 부칙 제2조)

○ 외화 LCR의 규제비율은 '17년부터 '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**'19년 최종 규제비율은 80%로 통일적으로 적용**

-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중앙회 이외의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'17년부터 기존의 **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비율 상향**

※ 시중은행 모니터링비율 : ('16) 50% → ('17) 60% → ('18) 70% → (19년) 80%
시중은행 규제비율(안) : ('16) 없음 → ('17) 60% → ('18) 70% → (19년) 80%

- 특수은행(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중앙회)에 대해서는 '17년에는 기존의 **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%로 도입**하고 **매년 20%씩 상향 조정**

※ 특수은행 모니터링비율 : ('16) 30% → ('17) 40% → ('18) 50% → (19년) 60%
특수은행 규제비율(안) : ('16) 없음 → ('17) 40% → ('18) 60% → (19년) 80%

○ 다만,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'17년에는 **기존의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%로 도입**하고 **매년 10%씩 상향 조정**하여 **'19년 최종 규제비율을 60%로 적용**

< 별첨 >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도입 방안 (16.6.16일)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5 외화 LCR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(안 제70조)

○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과 **동일한 수준으로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**

- **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2회 이하**인 경우에는 **사유서 및 달성계획서**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
- **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3회**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 비율을 **100분의 5만큼 상향**하여 적용
- **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4회**인 경우에는 외화 LCR 규제 비율을 **100분의 10만큼 상향**하여 적용
- **과거 1년동안 위반횟수가 5회이상**인 경우에는 **신규외화자금 차입**(만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)**을 금지**

6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대체가능한 규제,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일괄 정비 (안 제64조의2 삭제, 안 제64조)

○ 잔존만기 **7일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불일치 비율**과 **외화안전자산 보유 규제**를 폐지

○ 외화 LCR을 적용받는 은행에 대해서는 **외화유동성 비율**(잔존만기 3개월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이내 자산의 비율), 잔존만기 1**개월이내의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만기 불일치 비율**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 **은행의 중복불필요한 부담을 해소**

7 시행시기 : '17.1.1일부터 시행 (안 부칙 제1조)

Ⅲ 향후 계획

□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(40일, 16.7.26일~16.9.5일)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로써 확정할 예정